



## 제 6 편

---

### 기 타

동창회 회칙  
교직원 친목회칙  
노사협의회규정  
성희롱예방관련규정(폐지)  
서라벌대학교 학생회칙



# 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서라벌대학교 동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단결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경상북도 경주시내에 둔다.

## 제 2 장 사 업

제 4 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
2. 회원의 권익 옹호 및 공제 후생에 관한 일
3. 모교 발전 향상에 관한 일
4.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 및 표창에 관한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 제 3 장 회 원

제 5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라벌대학교 졸업생 및 학적을 두었던 자로 한다.

제 6 조(특별회원) 본회는 모교의 현직 교직원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졸업 시 본회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상벌) 회원 및 임원, 재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1. 본회 및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2.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한자는 회원으로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제 4 장 조 직

제 9 조(분회조직) 본회에는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역조직) 본회는 관외 지역에 지역별 동문회를 조직할 수 있다.

## 제 5 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 제 1 절 총 회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기획의 심의
2. 결산의 인준
3. 임원의 인준
4. 회칙 개정
5. 기타 중요 회무 결정

제13조(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임원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총회를 소집할 시는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서면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임원에게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임 원 회

제15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회장이 위촉한 임원으로 한다.

제16조(명예회장)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고문)**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8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개회중 중요한 회무처리
2. 결산안 의결
3. 회칙 개정안 작성
4. 임원의 보선
5. 회계 및 재산 관리
6.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7. 기타 본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격월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격월임원회는 격월중으로 하고, 임시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 6 장 임 원 회

**제20조(임원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및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 명
3. 수석부회장 : 1 명
4. 부회장 : 5 명
5. 사무국장 : 1 명
6. 사무차장 : 약간명
7. 감사 : 3 명
8. 상임이사 : 각기별 1명
9. 이사 : 30명 내외(지역동문회, 과동문회 등 회원20명 기준에 1명의 이사를 선임한다.)

**제21조(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3명),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임원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 부회장(3명)과 총회에서 선출한 부회장(3명)이 회장단에서 협의하여 수석부회장을 선임한다.

**제2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정기, 임시)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가 있을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모든 회무의 전반적인 운영 및 동창회보 발행을 관장한다.
4.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회무 전반에 관한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시는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종료)**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 7 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6조(회비)** 입회비는 영구회비제로 하고 회비, 입회비에 관한 일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비관리)** 회비관리는 사무국장이 관장하되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8 장 회칙개정

**제29조(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정기, 임시) 참석회원 1/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0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본 회칙은 1986년 4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교직원 친목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서라벌대학교 교직원 친목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회 원

**제 3 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라벌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및 원석학원 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 4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5 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 무 : 1인
4. 감 사 : 1인

**제 6 조(임원선임)** 본회의 임원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책무)** 본회의 임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그 책임을 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보존하고 재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 3 장 회 의

**제 9 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일주일전에 소집을 통보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본 회의 운영상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재정 및 개정
2. 예산의 결산 및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의 수립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의 승인
6. 입회비 및 정기회비의 결정

**제11조(임원회)** 본 회의 임원회는 정기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한다.

**제12조(의결)** 모든 각종 회의는 그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의 제명결의는 재적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4 장 재 정

**제13조(운영비)** 본 회의 운영비는 입회금, 월회비, 임시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회비)** 회비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 및 기타 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8,000원 (단, 가입시 1회에 한함)
2. 월회비 : 2,000원 (매월납부)

## 제 5 장 상 조 금

**제15조(상조금)**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길흉사에 전원 참석하여야 하며, 회원의 길흉사에 대한 상조금으로서 발생당시의 일반미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6조(전별금 지급)** 본 회를 탈퇴하는 회원은 재적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별금을 지급받는다.

1. 재적년수 1년이상 : 금 1/2돈
2. 재적년수 2년이상 : 금 1돈
3. 재적년수 5년이상 : 금 2돈

## 제 6 장 별 칙

**제17조(징계 및 자격상실)** 본 회의 목적과 의결사항을 위반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고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본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 칙

- ①(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의 친목회 관례에 준한다.
- ②(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장부 비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회 칙
  2. 회원명부
  3. 회원출석부
  4. 현금출납부
  5. 회 의 록
- ④(시행일) 본 회칙은 198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회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노사협의회규정

(개정 2017. 10. 18., 교무위원회 2017. 10. 13)

(개정 2016. 09. 09.)

(제정 2007. 06. 22.)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서라벌대학교 직원)와 사용자(서라벌대학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및 명칭)** 이 노사협회의 명칭은 서라벌대학교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본 대학 내에 설치한다.

**제 3 조(신의성실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 4 조(제3자 개입 배제)** ①본 대학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 또는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협의회 관계 당사자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며, 제3자의 개입을 적극 배제하여야 한다.

### 제2장 협의회 구성

**제 5 조(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1.“근로자”란 본 대학의 직원을 말한다.

2.“사용자”란 총장 및 보직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조(근로자위원)** ①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다.

②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10인 이상 추천인이 3인 미만인 경우 다수 추천인 순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

③인사, 회계 관련 팀장 이상 직원은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7 조(사용자위원)** 사용자 위원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8 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의장)** ①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운  
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 위  
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  
은 소속부서 동료사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 제3장 협의회 운영

**제12조(회의개최)** ①협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 5, 8, 11월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의장은 협의회 회의의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①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  
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는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목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7조(회의록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기타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서상,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내용,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 제4장 협의회 의 임무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능률의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근로자의 안전, 보건 기타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6. 근로자에 관한 인사, 노무관리 제도 개선
7. 대학의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 등 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초래하는 경우
8. 근로자의 임금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개선
9. 신제도 등 도입 또는 대학 행정의 개선
10.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학교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0조(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대학운영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중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
2. 근로자의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중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

**제21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게시, 교내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들에게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사원과 사용자는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둘 수 있다.

1.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장 고충처리

**제24조(임의중재기구 활용)**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에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6조(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충고한다.

② 고충처리 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은 처리할 수 없는 직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실)** 대학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장 보 칙

**제30조(주무부서)**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16.09.09., 2017.10.18>

**제31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으로 종전의 노사협의회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위원의 잔여 임기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으로 본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성희롱 예방 관련규정

(제정 2014. 07. 24, 법인인가일 2014. 07. 2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제18조(의결통고) (폐지)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7일부터 폐지한다.

# 서라벌대학교 학생회칙

(제정 2014. 12. 0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서라벌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라벌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는 서라벌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회원의 자격)** 학생회 회원은 서라벌대학교의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징계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구성)** 학생회는 학생연합회, 동아리연합회, 각 학과 학생회로 구성한다.

**제6조(지도)** 학생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학생연합회

**제7조(지위)** 학생연합회는 학생회의 의결·집행기구이다.

**제8조(구성)** 학생연합회는 각 학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학과 학생회장이 미선발된 학과는 학년대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연합회 재적회원 중 추천을 받아 6인 내외로 두며,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된다. 단, 선출된 위원장은 학생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연합회의 전체운영 계획수립, 예·결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학생행사준비위원회)** ① 학생행사준비위원회는 학생연합회 재적회원 중 추천을 받아 6인 내외로 두며,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된다. 단, 선출

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행사준비위원회는 학생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학생행사준비위원회는 각종 교내외 행사 계획수립 및 진행, 졸업앨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학생연합회의) ① 학생연합회의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학생연합회의의 의장은 안전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생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동조 제1항에 따른 소집 요청이 있음에도 2주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으로 특정한 날에 연합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학생연합회의에서는 학생회칙의 회칙개정안 발의 및 심의, 학생연합회 회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에 건의할 수 있다.

### 제3장 동아리연합회

제12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서라벌대학교 동아리를 대표하는 의결·집행기구이다.

제13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본교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회장 및 부회장) ①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통해 선출된다.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동아리연합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은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15조(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연합회의의 소집 및 절차는 학생연합회의를 준용한다.

제16조(동아리연합회장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연합회의 전체운영 계획의 수립, 예산 및 결산의 편성
3. 동아리연합회의 예산 집행
4. 동아리연합회의의 소집 발의 및 의결
5. 학생회칙의 회칙개정안 발의
6.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에 건의

### 제4장 학과 학생회

제17조(구성) 학과 학생회는 해당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18조(회장)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학과를 대표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학과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19조(권한) 학과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학과 학생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
2. 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임명 및 해임
3. 학과장 및 전임교수의 승인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제20조(지도) 학과 학생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과장 및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본회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하며 학기별로 구분하여 예·결산을 집행한다.

제23조(회비관리 및 집행) ① 학생회비의 징수·관리 및 집행감독은 학교 관계부서에서 하고, 집행은 각 자치기구가 한다.

② 예산 집행 시 집행사항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① 예산은 학생회 각 자치기구별 운영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관계부서의 지도를 통해 확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확정된 예산을 학생회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25조(결산) 결산은 본회 각 자치기구별 결산서류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기말 15일 전까지 관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 선거

제26조(선거방법) 본회의 각종 선거는 선거 4원칙(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27조(선거권) 선거권은 본회 회원으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고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에게 있다.

제28조(피선거권)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을 갖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2. 본교에 2학기 이상 4학기 이내 이수 중인 자로 4학기 이내 졸업이 가능하며, 잔여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단, 3년제는 6학기 이내 졸업이 가능한 자)

3. 전체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제29조(임기)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7장 회칙 개정

제30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학생연합회·동아리연합회·학과 학생회장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31조(의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3일 이내에 학생연합회·동아리연합회·학과 학생회장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공포) 의결·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